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2025. 6. .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 I. 제안이유 및 경과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2025년 5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II. 세입·세출 결산

### 1. 회계현황

2024년도의 회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9개, 기금 18개가 설치·운영되었음.

### 2. 세입·세출결산

#### 가. 세입·세출 결산 요약

우리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은 2,920,306백만원, 총세출은 2,498,983백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21,323백만원임

○ 재정규모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회계	세 입	2,321,120	2,379,998	2,505,015	2,417,333	2,423,669
	세 출	1,993,239	2,004,656	2,049,089	2,051,111	2,141,964
	결산상잉여금	327,881	375,343	455,925	366,222	281,705
공기업 특별회계	세 입	229,016	232,849	217,567	218,909	220,874
	세 출	145,151	148,846	142,759	144,623	165,065
	결산상잉여금	83,865	84,003	74,808	74,286	55,809
기타 특별회계	세 입	231,085	224,289	203,900	208,325	275,763
	세 출	147,942	112,706	84,583	73,162	191,954
	결산상잉여금	83,144	111,583	119,316	135,163	83,809
총 계	세 입	2,781,221	2,837,136	2,926,482	2,844,567	2,920,306
	세 출	2,286,332	2,266,208	2,276,432	2,268,896	2,498,983
	결산상잉여금	494,890	570,928	650,050	575,671	421,323

나. 세입·세출결산 분석

(1)세입결산

(단위:원, %)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대비 수납비율 (%)	
전년도	2,413,077,630,750	2,505,070,830,951	2,417,332,965,145	5,329,471,510	82,408,394,296	96.5	
당 해 연 도	계	2,431,602,203,067	2,521,872,543,442	2,423,668,813,958	6,578,842,310	91,624,887,174	96.1
	지방세 수	472,400,000,000	553,858,168,720	481,150,250,580	5,997,830,880	66,710,087,260	86.9
	세외입 수	137,208,214,000	162,327,944,897	136,920,023,823	581,011,430	24,826,909,644	84.3
	지방부 교세	274,910,000,000	266,188,541,000	266,188,541,000	-	-	100.0
	조교부 정금	213,498,000,000	213,566,256,000	213,566,256,000	-	-	100.0
	보조금	913,761,622,000	903,444,007,640	903,365,634,640	-	78,373,000	100.0
	보수전 입등	419,824,367,067	422,487,625,185	422,478,107,915	-	9,517,270	100.0

- 2024년도 세입예산현액 2,431,602,203,067원 중 전년도이월액 256,929,160,067원을 제외한 예산액은 2,174,673,043,000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현액 2,413,077,630,750원 중 전년도이월액 300,355,663,750원을 제외한 예산액은 2,112,721,967,000원과 비교하였을 때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음.
- 2024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553,858,168,720으로 2023년도 556,347,774,483원에 비해 0.4%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전년도 59,237,806,200원 대비 12.6%가 증가한 66,710,087,260원임.
- 2024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62,327,944,897원으로 2023년도 164,123,866,342원에 비해 1.1%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전년도 23,170,402,306원 대비 7.1%가 증가한 24,826,909,644원임.

## (2)세출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sup>㉠</sup>	지 출 액 <sup>㉡</sup>	이 월 액 <sup>㉢</sup>	집행잔액(잉여금) ㉠-㉡-㉢
전 년 도	2,413,077,630,750	2,051,110,532,227	256,929,160,067	105,037,938,456
당해연도	2,431,602,203,067	2,141,963,929,343	169,977,777,657	119,660,496,067

-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431,602,203,067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169,977,777,657원으로서 전년대비 86,951,382,41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도 10.6%에서 2024년도 7.0%로 3.6% 감소하였음. 전년대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전부 감소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2023년도 4.3%에서 2024년도 4.9%로 증가하였고, 집행 잔액은 전년도보다 14,622,557,611원이 증가함. 2024년도 집행 잔액 중 보조금 반납금(국·도비 잔액)은 33,296,089,670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시

비 불용액)은 15,986,367,362원임. 그 외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집행사유미발생과 지출잔액이 큰 부분을 차지함.

-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전년도에 비해 239,682,483,020원 증가하였음. 예산전용은 전년대비 77,850,000원 증가하였고, 예산이체는 전년대비 239,604,633,020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결 산 상 잉 여 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납 금	순세계 잉여금
계	2,923,666	2,920,306	2,498,983	421,323	41,362	13,500	190,108	23,629	152,724
일 반 회 계	2,431,602	2,423,669	2,141,964	281,705	27,730	8,718	133,530	22,905	88,822
공기업특별회계	217,771	220,874	165,065	55,809	1,963	3,459	9,469	223	40,695
상 수 도 사 업	97,431	97,795	68,544	29,251	600	273	5,920	131	22,327
하 수 도 사 업	120,340	123,079	96,521	26,558	1,363	3,186	3,549	92	18,368
기 타 특 별 회 계	274,293	275,763	191,954	83,809	11,669	1,323	47,109	501	23,207
의료급여사업	8,034	8,055	7,972	83	-	-	-	2	81
발전소 주변 지 원 사 업	185	184	175	9	-	-	-	9	0.2
수 질 개 선	36,193	36,248	34,407	1,841	316	10	-	226	1,289
공유재산관리	58,181	58,751	43,036	15,715	10,858	-	2,495	-	2,362
교 통 사 업	49,469	51,791	22,409	29,382	274	-	25,064	-	4,044
도시재정비 촉 진	2	2	-	2	-	-	-	-	2
지 하 수 관 리	1,604	1,602	1,220	382	-	-	-	8	374
폐 기 물 처 리 시 설	78,080	78,109	49,623	28,486	-	-	12,328	-	16,15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2,545	41,021	33,112	7,909	221	1,313	7,222	256	△1,103

### 3.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 가.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 314건 / 169,977,777,657원 (명시·사고이월 중복 4건)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명시이월 : 81건 / 27,730,155,590원
    - 사고이월 : 56건 / 8,718,119,900원
    - 계속비이월 : 181건 / 133,529,502,167원
  
- 기타특별회계 : 34건 / 60,100,873,343원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에 대하여 회계별로 다음과 같이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 1건 / 326,012,000원 (명시·사고이월 중복 1건)
      - 명시이월 : 1건 / 315,701,000원
      - 사고이월 : 1건 / 10,311,000원
  
    -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 7건 / 13,353,447,910원
      - 명시이월 : 2건 / 10,857,668,000원
      - 계속비이월 : 5건 / 2,495,779,910원
  
    - ▶ 교통사업특별회계 : 13건 / 25,337,593,420원
      - 명시이월 : 1건 / 273,903,600원
      - 계속비이월 : 12건 / 25,063,689,820원
  
    -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2건 / 12,328,215,000원
      - 계속비이월 : 2건 / 12,328,215,000원
  
    -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 11건 / 8,755,605,013원
      - 명시이월 : 1건 / 221,384,200원
      - 사고이월 : 2건 / 1,312,683,250원
      - 계속비이월 : 8건 / 7,221,537,563원

## 나. 예비비

○ 일반회계 : 8건 / 495,637,480원 지출

-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05,186,000원으로서 8건 1,525,00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95,637,480원을 지출하고 848,886,620원을 이월하였으며 180,481,9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사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결산하였습니다.

(단위: 원)

지출부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출잔액
	8건	1,525,006,000	495,637,480	848,886,620	180,481,900
지역경제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45,000,000	13,500,000	-	31,500,000
회계과	손해배상예정금 감액 판결로 인한 계약보증금 반환	3,530,000	3,522,400	-	7,600
건축관리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42,000,000	18,900,000	-	23,100,000
도로건설과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 종결(원고 일부 승소 및 화해권고 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	447,332,000	444,426,080	2,905,920	-
농업기술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4,844,000	2,844,000	-	2,000,000
도로관리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551,300,000	-	551,300,000	-
공원관리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220,000,000	-	96,125,700	123,874,300
진건읍 도시건축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211,000,000	12,445,000	198,555,000	-

○ 기타특별회계 : 1건/ 115,000,000원 지출

-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387,642,000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건 115,00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5,000,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지출잔액은 0원이며, 그 사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결산하였습니다.

(단위:원)

지출부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출잔액
1건		115,000,000	115,000,000	-	-
재산관리과	남양주시청 별관동 철거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권고액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115,000,000	115,000,000	-	-

#### 4.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 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함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5건

○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5건			1,371,925,000	261,900,000	261,900,000	
의회사무국	의회 의정홍보	201-01 사무관리비	378,089,000	250,000,000	-	정보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의회 의정홍보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25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자리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	7,500,000	-	2차(재지정)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자산취득비 편성에 따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일부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마을기업 육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	7,500,000	
징수과	체납액고지	201-02 공공운영비	298,131,000	1,200,000	-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액 중 4대보험 사업자분 부담액 추가발생으로 예산부족액 발생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실태조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305,000	-	1,200,000	
복지행정과	국경일 및 보훈행사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4,400,000	3,000,000	-	보훈행사 추진 시 필수 물품에 대한 물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로 부득이한 계획변경으로 전용
	국경일 및 보훈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2,000,000	-	3,000,000	
생태하천과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위탁	307-05 민간위탁금	598,950,000	200,000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추가 개최(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위탁	201-01 사무관리비	1,050,000	-	200,000	

○ 기타특별회계 : 없음

## 다. 예산이체

○ 일반회계 : 568건 / 307,458,383,020원

-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568건 307,458,383,020원을 이체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기타특별회계 : 21건 / 16,152,614,683원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 21건 / 16,152,614,683원

-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21건 16,152,614,683원을 이체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5.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 결산결과 해당없음

## Ⅲ. 기금결산

- 2024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서
  -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373,074,645,442원에서
  - 2024년도 조성액은 131,939,936,102원이며, 10,503,154,224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 494,511,430,320원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임

(단위: 원)

기금명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373,074,648,442	131,939,936,102	10,503,154,224	494,511,430,320
재난관리기금		48,720,989,089	5,055,143,520	1,682,407,730	52,093,724,879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		79,704,410	105,500,630	-	185,205,040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4,099,657,460	1,163,669,000	-	5,263,326,4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46,340,678,110	95,086,388,070	2,494,085,520	238,932,980,660
중소기업육성기금		24,790,671,032	3,260,973,780	479,480,210	27,572,164,602
신청사건립기금		65,667,751,970	20,000,860,390	-	85,668,612,360
식품진흥기금		671,393,030	231,654,750	215,221,490	687,826,290
남양주시자활기금		2,176,850,648	161,977,368	130,016,400	2,208,811,616
노인복지기금		2,057,173,084	63,707,810	61,900,000	2,058,980,894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18,146,886,350	1,898,972,550	-	20,045,858,900
양성평등기금		2,116,999,515	69,171,408	53,587,000	2,132,583,923
남양주시장학기금		8,187,320,519	440,939,449	365,109,340	8,263,150,628
체육진흥기금		6,166,788,189	190,735,715	121,733,550	6,235,790,354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629,487,512	516,492,919	540,500,000	9,605,480,431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119,838,719	2,147,046,153	1,957,531,000	10,309,353,872
옥외광고발전기금		1,834,376,095	109,331,740	1,022,365,880	921,341,95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822,325,440	937,258,580	746,216,104	20,013,367,916
농업특산품육성기금		2,445,757,270	500,112,270	633,000,000	2,312,869,540

## IV. 재무제표 결산

### 1.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

○ 2024회계연도의 남양주시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 정 상 태 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24		202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757,244	8.41	845,454	9.50
투자자산	208,325	2.31	207,166	2.33
일반유형자산	564,777	6.27	522,946	5.87
주민편의시설	1,879,122	20.87	1,801,781	20.24
사회기반시설	5,565,883	61.81	5,493,777	61.70
기타비유동자산	30,050	0.33	32,740	0.36
<b>자산총계</b>	<b>9,005,401</b>	<b>100.00</b>	<b>8,903,864</b>	<b>100.00</b>
유동부채	30,036	61.73	29,459	63.55
장기차입부채	-	0.00	-	0.00
기타비유동부채	18,619	38.27	16,898	36.45
<b>부채총계</b>	<b>48,655</b>	<b>100.00</b>	<b>46,357</b>	<b>100.00</b>
고정순자산	8,039,904	89.76	7,851,151	88.64
특정순자산	267,771	2.99	235,602	2.66
일반순자산	649,236	7.25	770,754	8.70
<b>순자산총계</b>	<b>8,956,746</b>	<b>100.00</b>	<b>8,857,507</b>	<b>100.00</b>
<b>부채및순자산총계</b>	<b>9,005,401</b>	<b>-</b>	<b>8,903,864</b>	<b>-</b>

▶ 2024회계연도 말 남양주시의 자산은 9,005,401백만원으로 전년도 8,903,864백만원보다 101,537백만원(1.1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채는 48,655백만원으로 전년도 46,357백만원보다 2,298백만원(4.96%) 증가하였습니다.

[재 정 운 영 표(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					2023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I.사업순원가	1,916,970	1,028,868	888,102	-	888,102	1,799,911	945,938	853,973	-	853,973
II.관리운영비	-	-	301,756	(69,048)	232,708	-	-	288,652	(67,901)	220,751
III.비배분비용	-	-	54,115	(2,727)	51,388	-	-	52,576	(1,155)	51,421
IV.비배분수익	-	-	129,957	(2,727)	127,230	-	-	74,845	(1,155)	73,690
V.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	-	1,114,016	(69,048)	1,044,968	-	-	1,120,356	(67,901)	1,052,455
VI.일반수익	-	-	1,145,763	(69,048)	1,076,715	-	-	1,177,603	(67,901)	1,109,702
VII.재정운영결과 (V-VI)	-	-	(31,747)	-	(31,747)	-	-	(57,247)	-	(57,247)

▶ 2024회계연도 남양주시의 사업순원가는 888,102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232,708백만원), 비배분비용(51,388백만원) 및 비배분수익(127,230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044,968백만원입니다.

[재 정 운 영 표(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		202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건비	248,509	11.29	238,490	11.51
운영비	613,039	27.85	595,571	28.74
정부간이전비용	80,415	3.65	73,010	3.52
민간등이전비용	1,138,724	51.74	1,051,087	50.73
기타비용	120,379	5.47	113,925	5.50
<b>비용총계</b>	<b>2,201,066</b>	<b>100.00</b>	<b>2,072,083</b>	<b>100.00</b>
자체조달수익	784,860	35.15	745,384	35.01
정부간이전수익	1,438,926	64.44	1,376,776	64.66
기타수익	9,027	0.41	7,170	0.33
<b>수익총계</b>	<b>2,232,813</b>	<b>100.00</b>	<b>2,129,330</b>	<b>100.00</b>
<b>재정운영결과</b>	<b>(31,747)</b>	<b>-</b>	<b>(57,247)</b>	<b>-</b>

- ▶ 또한 2024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비용은 인건비 248,509백만원(11.29%), 운영비 613,039백만원(27.85%), 정부간이전비용 80,415백만원(3.65%), 민간 등 이전비용 1,138,724백만원(51.74%), 기타비용 120,379백만원(5.47%)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784,860백만원(35.15%)이고, 정부간이전수익 1,438,926백만원(64.44%), 기타수익 9,027백만원(0.41%)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총비용은 2,201,066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98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총수익은 2,232,81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3,48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1,438,926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2,15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 2024회계연도 남양주시의 운영차액(수익-비용)은 31,74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50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2. 채권 현재액

-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332,562,444원에서 당해연도에 1,148,645,240원이 발생하고 1,010,593,97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470,613,714원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위:원)

회계별 /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1,332,562,444	1,148,645,240	1,010,593,970	11,470,613,714
일반회계	7,318,080,000	277,000	114,210,000	7,204,147,000
남양주시자활기금	365,934,654	84,929,330	135,945,060	314,918,924
농업특산품육성기금	3,648,547,790	1,063,438,910	760,438,910	3,951,547,790



##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3,688개 34,828,883,140원으로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121개 870,138,315원이 증가하였으며, 36개 288,001,335원이 매각 및 폐기처분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3,773개 35,411,020,120원의 물품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결산하였습니다.

(단위:개, 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3,688	34,828,883,140	121	870,138,315	36	288,011,335	3,773	35,411,020,120

## VII. 종합의견

-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2,923,66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2,920,306백만원)의 비율은 99.9%,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액(2,498,983백만원)의 비율은 85.5%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2,72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2%)으로 확인됩니다.
-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은 2.6% 증가, 세출결산액은 10.1%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1.1% 증가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 2,141,964백만원 중 사회복지분야가 10,308백만원(48.1%)으로 지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통 및 물류분야가 247,322백만원(11.5%), 기타 214,198백만원(10.0%)순입니다.
- 이번 2024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결산을 보면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74,293백만원, 세입결산액 275,763백만원, 세출결산액 191,95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0%)이며, 기금의 경우 조성액(전년도말 현재액+현년도 조성액) 505,014백만원, 사용액 10,503백만원(조성액 대비 사용비율 2.1%),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94,51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5%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9개 및 기금 18개의 운용은 목적사업을 위해 5년 기한 별도 계정으로 운용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법정외특별회계(1개) 및 법정외기금(6개)을 제외하고는 획기적인 통·폐합으로 재정운용의 극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남양주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교부세 등의 의존수입이 세입재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탄력적인 자원 활용이 더욱 중요하며, 시의 슈퍼성장과 민생편익 증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부과·징수 및 새로운 세수를 확보 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기간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법률상 저촉 여부 확인,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주민 의견 수렴 등의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 중 변동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년간 진행이 더디거나 중단되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사업 일몰 등을 검토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공기업법

-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